### 부동산시장 동향 〈Summary〉

#### [ 주택 및 토지시장 ]

- 주택 가격: 11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.15%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
  - 9.13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강화 이후 매수수요가 위축되면서 안정
  - 수도권과 5개광역시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각각 0.34%, 0.13%에 그치며,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며, KB부동산 매매전망지수 역시 조사이래 최저 수준
  - 한편, 전세가격(0.03%) 역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안정세 지속
- 주택 거래: 10월 주택거래량은 9월 대책 이전 거래수요가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6.4% 증가
  -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시장분위기를 감안하면,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주택 공급 : 분양시기가 지연되면서 연말까지 30만호 초반 수준에 머무를 전망
  - 11월 분양물량은 2.7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.2% 감소하였으며, 사업장 내부 갈등 및 분양가 산정 등의 이슈,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분양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
- 주택금융 :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.02%p 상승한 3.31%를 기록
  -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5개월간 18bp하락하였으나, 11월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향후 상승세 지속 전망
- 토지: 토지가격은 파주 등 접경지역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0.45% 상승
  - •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군사보호시설 해제로 토지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며, 토지거래량도 28.2만 필지로 올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

#### [ 상업<del>용</del> 시장 ]

- 오피스텔: 2018년 수도권 오피스텔 입주물량 5.6만호로 전녀대비 56% 증가
  - 입주물량 증가로 오피스텔 임차거래 비중에서 전세거래건수(2.6만호)가 전년대비 22.2% 증가
- 오피스: 매매가격 상승으로 서울 오피스 빌딩 자본환원율 전분기대비 0.03% 상승한 4.69% 기록
  - •경기 침체 등에 따른 오피스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, 서울 중대형오피스를 중심으로 당분 간 양호한 흐름 전망
- 상가: 자영업 경기 침체 우려에도 상가 분양 증가
  - 자영업자의 경기침체와 국지적인 공급과잉 우려에도 전국 상가분양물량은 전분기대비 34.3% (전년동기대비 6.2%) 증가

### [주택 가격] 전국 주택매매가격、매수심리 위축되며 강보합 수준으로 **둔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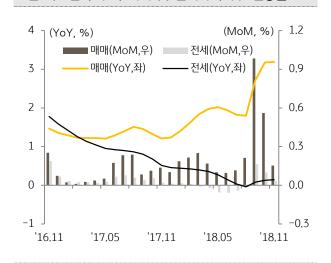
# 규제 발표 이후 매수수요 감소로 상승폭 둔화

-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(0.15%) 크게 축소
  - 9.13대책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수요가 급감하면서 전국 주택매매 가격 상승폭은 크게 둔화
  - 2013년 9월 이후 5년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은 유지중이나, 매수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 둔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
- ※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(%): '18.8월(0.21)→9월(0.98)→10월(0.56)→11월(0.15)
- 지역별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지역이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또는 하락
  - 수도권(0.34%)과 5개광역시(0.13%)는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고, 기타지방(-0.35%)은 하락폭 확대
- 12월 매매가격은 매수심리 부진 지속으로 보합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

### 전국 주택전세가격 보합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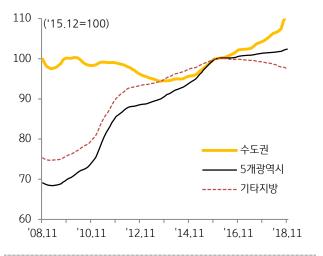
- 전국 주택전세가격(0.03%)은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입주물량 증가 의 영향으로 보합 수준 기록
- 지역별 전세가격 또한 매매가격과 동일한 기조 유지
  - 수도권(0.13%)과 5개광역시(0.09%)는 강보합 수준으로 둔화되었고, 기타지방(-0.27%)은 23개월 연속 하락
- 12월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영향이 지속되면서 보합 수준 예상

#### 그림 1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변동률



#### 자료: KB국민은행

#### 그림 21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



자료: KB국민은행

### [주택 가격] (수도권) 매수수요 감소 영향 확대로 매매가격 상승<del>폭</del> 둔화 지속

# 규제 강화 영향으로 서울, 경기는 둔화

- 수도권 주택매매가격(0.34%)은 매수수요 안정을 위한 연이은 규제 대책 발표로 전월(1.00%)대비 상승폭 축소
- 세부 지역별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된 서울과 경기는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, 인천은 상승폭 소폭 확대
  - •서울(0.40%)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무주택자 또한 DSR 시행 등 진입장벽 생성으로 대부분 지역이 상승폭 둔화
  - 경기(0.35%)는 수원장안(1.07%)을 제외한 전지역이 1% 이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울과 함께 매매시장 안정 분위기 확대
  - 인천(0.17%)은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규제 미적용에 따른 매수수 요 유입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은 다소 확대
- 12월 수도권 매매시장은 규제 영향 지속으로 강보합 수준으로 둔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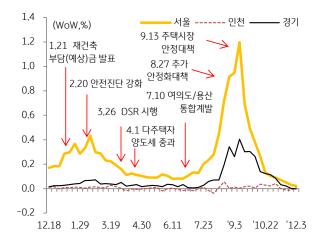
# 수도권 전세시장 입주물량 증가로 강보합

- 수도권 전세가격(0.13%)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둔화
  - 서울(0.23%)은 신규 입주물량과 기존 입주단지의 전세만기 시기가 겹 친 마포(-0.11%)가 하락하는 등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이 점차 확대
  - •경기(0.06%)와 인천(0.05%)은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강보합 수 준에서 안정적인 흐름 유지
- 수도권 12월 전세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입주가 이어 지면서 당분간 보합수준에서 안정된 흐름 기대

#### 그림 31 수도권 매매/전세가격 변동률(18.11월)

#### (MoM, %) - 매매 ■ 전세 8.0 0.6 0.35 0.40 0.4 0.17 0.2 0.06 0.05 0.0 -02 -0.4 -0.6-0.8 서울 경기 인천

# 그림 41 수도권 주간매매가격 변동률



자료: KB국민은행

★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

# [주택 가격] (5개광역시) 지역별 매매가격 3강/2약 흐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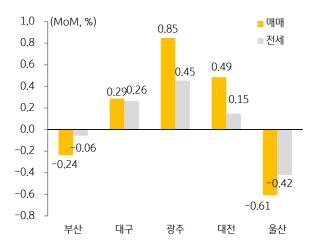
# 규제 비적용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

- 5개광역시 주택매매가격(0.13%)은 수도권 대비 완화된 규제적용으로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 기록
  - 광주(0.85%)는 매물 부족에 따른 매도자 우위 지속으로 광산구 (1.35%), 서구(0.76%) 등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 상승세
  - 대전(0.49%)은 규제 비적용에 따른 풍선효과로 유성구(1.09%), 서구 (0.61%) 등 세종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
  - •대구(0.29%)는 전월대비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, 남구(1.46%)는 상승폭 확대되었고, 부산(-0.28%)과 울산(-0.61%)은 지역경기 침체 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 확대되면서 부진
- 5개광역시 매매가격은 규제 공백에 따른 매수수요가 유입되는 광주, 대 전 등 일부지역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

# 세부지역별 매매가격 과 동일한 전세가격 흐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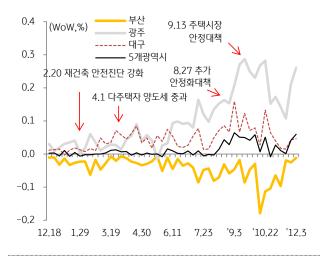
- 5개광역시 전세가격(0.03%)은 보합 수준에서 안정
  - 매매가격 상승지역인 광주(0.45%)와 대구(0.26%), 대전(0.15%)에 서 나란히 상승세 기록
  - 반면 부산(-0.06%)과 울산(-0.42%)은 장기간 하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매시장과 함께 부진한 흐름이 지속
- 5개광역시 전세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전망

### 그림 51 5개광역시 매매/전세가격 변동률('18.11월)



### 자료: KB국민은행

### 그림 61 5개광역시 주간매매가격 변동률



자료: KB국민은행

# [주택 가격] (기타지방) 공급증가 영향으로 주택매매가격 2년 연속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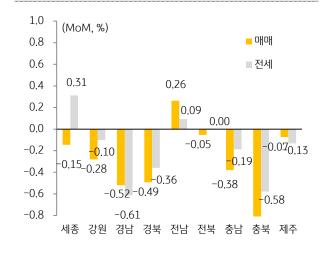
# 경상, 충청 주택시장 입주물량 부담 속 매매가격 하락 지속

- 기타지방 주택매매가격(-0.35%)은 2개월 연속 하락폭 확대
  -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부진과 더불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으로 기타지방은 2년 연속 하락
- 지역별로 수급여건이 안정된 전남(0.26%)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
  - 입주물량 증가로 청주(-1.18%), 천안(-0.49%) 등 충청지역 주요도 시들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충청 지역은 전반적으로 부진
  - 경남(-0.52%)을 비롯해 강원(-0.28%) 등 기타지방 대부분 지역은 적체된 입주물량과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락폭 확대
  - 한편 세종(-0.15%)은 규제 강화 이후 매수수요 유입이 제한되면서 하락 전환
- 12월 기타지방 매매시장은 매수수요 위축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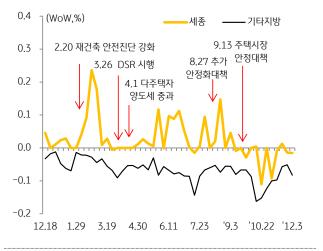
# 기타지방 전세가격 약세 지속

- 기타지방 전세가격(-0.27%)은 입주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하락
  -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수요 부족으로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전남 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
  - 한편 세종(0.31%)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매수수요자들의 전세수 요 전환으로 3개월 연속 상승

#### 그림 기 기타지방 매매/전세가격 변동률('18.11월)



### 그림 81 기타지방 주간매매가격 변동률



자료: KB국민은행

# 「주택 가격」 KB부동산매매전망지수 조사이래 최저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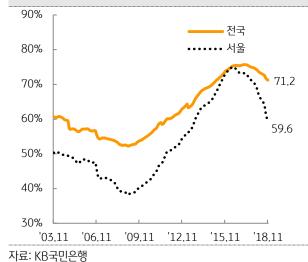
# 매매대비 전세가격 비율 하락세 지속

- 전국 아파트 매매대비전세가격 비율은 71.2%로 21개월 연속 하락
  - •전세가격 대비 높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매매대비전세가격 비율은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하락폭(-0.2%p)은 축소
  - 지역별로 수도권(68.8%/전월대비-0.4%p)과 5개광역시(71.8%/-0.1%p) 는 하락한 반면 기타지방(76.0%/0.2%p)은 소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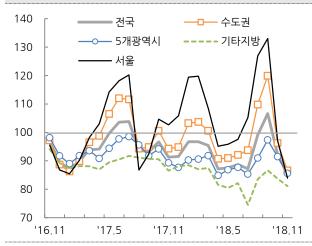
# 광주광역시 제외한 전 지역 '하락전망'

- 11월 KB부동산 매매전망지수¹(85.0)는 '하락 전망'이 우세한 가운데 지수 수준은 2013년 4월 조사 이래 최저치 갱신
  - 주택시장 진입 수요 차단을 위한 각종 규제 시행으로 매수심리가 둔 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침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
  -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수요 부진에 따른 매매가 격에 하락 우려가 큰 상황
  - 유일한 '상승전망'지역인 광주(100.5)도 지수 기준에 근접하며 하락
  - ※주요지역별 매매전망지수: 서울(83.9), 경기(88.1), 인천(89.4), 광주(100.5), 대구 (94.0), 대전(98.8) 기타지방(81.1)
- 한편, KB부동산 전세 전망지수(88.6)는 수도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증가가 예정되면서 '하락전망'으로 유지

### 그림 9)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 추이



### 그림 101 KB부동산 매매 전망지수 추이



자료: KB국민은행

 $<sup>^{1}</sup>$  KB부동산 매매/전세가격 전망지수는 3개월 후 아파트매매/전세가격에 대해 크게상승, 약간상승, 보합, 약간하락, 크게하락의 5가지 중 하나를 부동산 중개업체가 선택하여 작성된 지표로 100이면 보합이고,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음 ("KB부동산매매/전세가격 전망지수" = 100 + (("크케상승"비중×1+"약간상승"비중×0.5) - ("크케하락"비중×1+"약간하락"비중×0.5)) )

# [주택 거래] 주택매매거래. 대책 이전 거래량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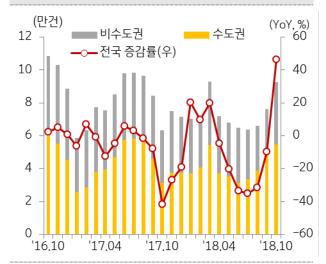
# 10월 주택매매거래 전년동기대비 46.4% 증가

-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46.4% 증가한 9만 2.566호
  - •지난 3월 이후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5개월만에 증가하였으며, 수도권은 전년동기대비 46.4%나 증가해 증가세를 주도
  - 전월대비로는 21.6% 증가하였으며, 3개월 연속 증가
  - 한편, 10월말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8.1% 감소
- 정부대책 이전 가격 급등기 시기의 거래가 상당부분 반영
  - 주택거래 신고기간 60일을 감안하면, 9월 대책 이전 상황이 반영되면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
  - •최근 경기 둔화 상황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

### 미분양 아파트 비수도권 증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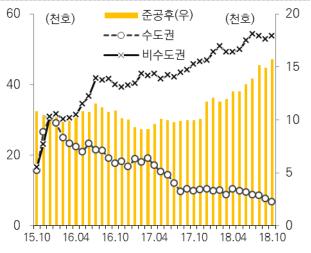
- 9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 502호를 기록해 전월대비 큰 변화가 없는 상황
  - •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감소, 비수도권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역 별 분양시장 양극화 지속(수도권 -12.7%, 비수도권은 1.7%)
- 전반적인 미분양아파트 적체 수준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지역별로 시장 이 양극화 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판단 필요
  - •지역별로는 경상권을 비롯해 과거 금융위기 최고점 대비 50%를 넘어서는 지역이 나오고 있으며, 준공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

### 그림 11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



자료: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

# 그림12] 미분양 아파트 물량 추이



자료: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

# [주택 공급] 분양 물량, 사업 지연으로 지난해와 유시한 수준에 그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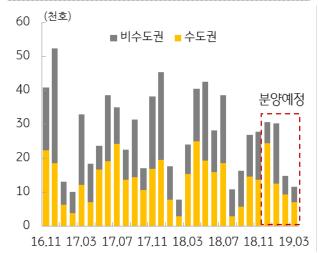
# 연말까지 분양물량 30만호 초반으로 지난해 수준

- 11월 분양물량은 2.7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.2% 감소
  - 수도권(1.4만호)에서 전년동월대비 19.1%감소했으며, 비수도권(1.4 만호)은 33.6% 감소
  - 대규모 단지들의 사업일정이 내부 갈등 및 분양가 산정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분양물량은 전반적으로 감소
- 11월말까지 아파트 분양물량은 28.1만호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
  - 분양시장 호황으로 올해 분양물량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양일정 연기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30만호 초반 수준에 그칠 전망
  -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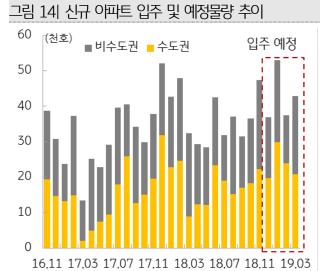
# 입주물량,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증가

- 11월 입주물량은 약 4.7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5.3% 증가하였으며, 이 는 올 2월 이후 최고치
  - 수도권이 2.2만호, 비수도권은 2.5만호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3.4%, 38.0% 증가
-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은 경기가 좋지 않은 비수도권에서 더욱 클 것으로 전망

### 그림 131 아파트 분양 및 분양 예정물량 추이



자료: 부동산114



자료: 부동산114

### [토지] 경기도 접경지역 토지가격 상승세 지속

# 남북경협 기대로 접경지역 토지가격 상승세 확대

- 10월 전국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.45% 상승, 특히 파주 등 접경지역 토지가격 꾸준히 상승세
  - 남북경협 분위기에 힘입어 경기도 파주 및 강원 고성·연천군 일대의 토지가격 상승세 확대
  - ※ '18.1~10월 누적 상승률: 경기 파주 +8.7%, 연천군 +5.4%, 강원 고성+7.1%
  - •지난 12.5일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(경기도내 약 112km)되면서 향후 토지가격 추가상승 가능성 존재
  - ※총 해제면적은 3억4천만㎡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8%가 경기도에 위치

표 1 지역별 토지기격 변동률 현황(2018.10)

(단위: %)

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0.49	0.68	0.43	0.48	0.42	0.45	0.26	0.20	0.50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0.41	0.28	0.26	0.16	0.22	0.31	0.23	0.15	0.70

자료: 한국감정원

# 토지거래량 꾸준히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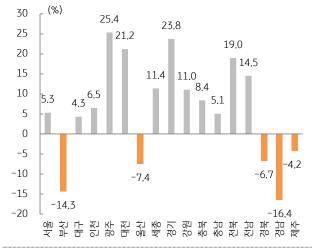
- 10월 전국 토지거래량은 28.2만 필지로 2018.3월 이후 최고 수준
  - 토지거래량은 전월대비 21.6% 증가(전년동월대비 +18.8%)하였으며 전라도 광주, 경기, 대전 등을 중심으로 증가
  - 지역주력산업 침체가 지속되는 경상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
### 그림 15 주요지역의 지가 변동률(10개월 누적)

#### 8.7% 7.1% 5.4% 5.0% 3.8% -0.7% -1.3% 전국 서울 파주 경기 고성 군산 창원 연천군 성산구

자료: 한국감정원

### 그림 16 2018년 1~10월 누적 토지거래량 증감률



자료: 한국감정원

# [주택금융시장]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전환, 규제에도 대출 증가율 횡보

#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전환,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 지속 예상

-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.02%p 상승한 3.31%를 기록
  - •5월 3.49%에서 10월 3.31%까지 5개월간 18bp 하락
  - •최근 다소 하락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1월 기준금리 상승 영향 으로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 예상
  - 코픽스 신규금리는 1.93%로 10bp 상승. 잔액금리도 1.93%로 3b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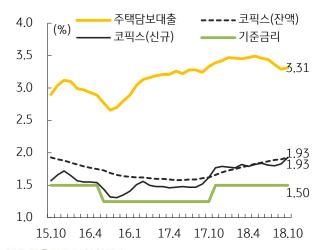
#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안정세 지속

- 10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동일한 0.19% 기록
  - 2017년 기준금리 25bp 인상 이후에도 연체율이 상승하지 않았던 점 고려시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상도 연체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  -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은 0.27%로 안정적 수준 지속

#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연초대비 상승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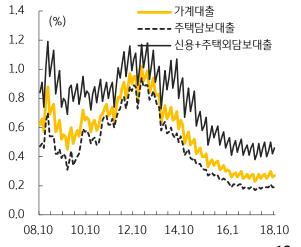
- 10월말 기준 은행권(+주금공 양도 포함)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3.5 조원 증가, 9월 증가액(3.7조원) 대비로는 0.2조원 감소
  - 9월에 이어 10월에도 0.6% 내외의 증가율 지속
  - ※ 주담대 증가율: '18.1월 0.23%→3월 0.49%→6월 0.55%→10월 0.59%
  - 9.13 대책 이후에도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 출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

#### 그림 171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



# (%)

그림 18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12

# [부동산 금융] 부동산 펀드 증가율 둔화, 신탁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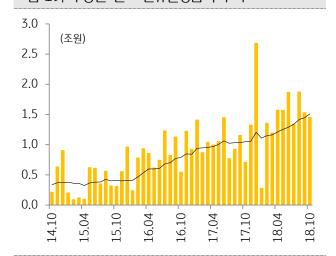
# 부동산 펀드 신규설정 시장상황 약화로 증기율 둔화

- 11월 부동산 펀드 신규설정액은 1.12조원으로 전월 대비 23% 감소
  - 17년 2월 이후 10개월째 월 1조 이상 신규 설정 지속
  - 9.13 대책 이후 국내 신규 설정 규모 크게 감소
  - ※18년 8월 1.07조, 9월 0.52조, 10월 0.85조, 11월 0.61조
  - •미국 주택시장 경기 둔화 상황과 상업용 부동산 경기하락 우려가 증가하면서 해외 신규 설정은 9월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
  - ※18년 8월 0.81조, 9월 1.02조, 10월 0.61조, 11월 0.51조

# 부동산 신탁 수탁고 4% 대 증가세 지속

- 2018년 3분기 부동산 신탁 수탁고는 4.0% 증가
  - 2018년 9월말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42.5조원으로 2분기말 233.3 조원 대비 4.0% 증가
  - 3분기 수탁고 증가액 9.2조원 중 부동산전업신탁사가 담보신탁 6.4 조(69.6%), 토지신탁 1.5조(16.6%)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은행이 담보 신탁 1.4조(15.0%)를 차지
  - 17년 이후 월 평균 1.2%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같은 재산신 탁 중 금전채권신탁이 17년 이후 월 평균 0.6% 성장하는 것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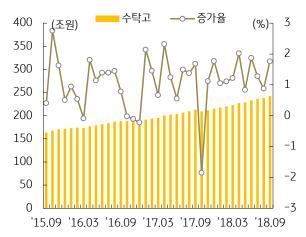
### 그림 19 부동산 펀드 신규설정금액 추이



주: 실선은 12개월 이동평균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### 그림 2이 부동산 신탁 수탁고 추이



주: 실선은 4분기 이동평균

자료: 금융감독원

### [상가] 자영업 경기 침체 우려에도 상가분양 증가

#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분양 크게 증가

- 2018년 3분기 전국 상가분양물량은 5,724호로 전분기(4,261호)대 비 34.3%, 전년동기(5,389호) 대비 6.2% 증가
  - •지역별로 경기지역 상가분양이 2분기 2,447호에서 3분기 3,687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분기 누적물량도 전년동기 대비 15.6% 증가
  - 반면, 서울의 경우 3분기 322호의 상가가 분양되었으며 1분기 1,014호를 고점으로 2분기 연속 분양물량이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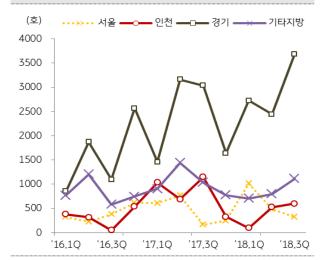
# 경기지역 분양가격 하락세, 서울은 상승

- 2018년 3분기 전국 상가 평균 분양가격은 1층 기준 911만원/㎡로 2분기 867만원/㎡ 대비 5.1% 상승
  - •상가 분양이 많았던 경기지역의 분양가격은 3분기 941만원/㎡을 기록하였으며 1분기 961만원/㎡을 연중 고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
  - •서울의 3분기 분양가격은 1,489만원/㎡으로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가 인천, 경기 지역보다 높은 979만원/㎡의 분양가격을 기록

# 상가분양시장 리스크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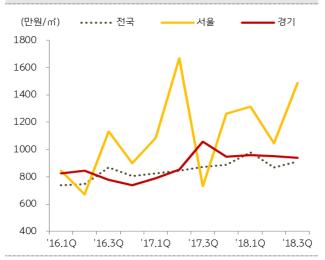
- 자영업 경기 침체와 국지적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가분양 시장 역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
  -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투자수익률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공급이 많은 경기지역 및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 등에서 미분양 및 공실 리스크 확대 가능성

#### 그림 21 지역별 상가분양 물량 추이



자료: 부동산114

#### 그림 22 상가분양가 추이



자료: 한국감정원

# [오피스텔]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거래는 증가, 월세거래는 감소

# 수도권 오피스텔의 입주물량은 증가

- 2018년 연간 수도권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큰 폭 증가
  - 2018년 12월말 누적기준 수도권 오피스텔 입주(예정)물량은 약 5만 6천호로 전년대비 56% 증가
  - 특히 경기도(3.6만호)와 인천(0.6만호)의 입주물량이 전년대비 각각 122%, 114% 급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 시현
  - 반면 서울은 전년대비 -16% 감소한 1.4만호가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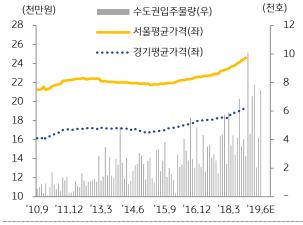
# 오피스텔의 임대수익 률은 하락세 지속

- 공급 증가에도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지속 상승
  - 11월 기준 서울지역 오피스텔 일반거래가격은 약 2억 4,617만원 수 준으로 전월대비 0.65%, 전년동기대비 6.20% 상승
  - 경기(19,397만원)와 인천(12,193만원)의 경우도 각각 전월대비 0.79%, 0.08%의 상승률을 기록
  - 평균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월 임대수익률은 모두 하락세 ※임대수익률(%,%p,전년대비):서울 4.65(-0.24), 경기 5.16(-0.18), 인천 6.2(-0.08)

#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기간대비 증가

- 수도권 오피스텔 임차시장의 경우, 전세는 늘어난 반면 월세는 감소
  - 11월말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5.2만호로 전년동기간대비 8% 증가 하였으나 월세(3.6만호)는 3.3% 줄고, 전세(2.6만호)는 22.2% 증가
  - 임차시장내 전세거래 증가는 지속되는 입주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, 이러한 시장변화로 인해 당분간 임대수익률 개선은 어려울 전망

### 그림 23|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 및 입주물량



자료: KB국민은행(일반거래가 기준), 부동산114

### 그림 241 수도권 전월세거래량 변화



자료: 국토교통부

# [오피스]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, 양호한 흐름 지속

# 서울 오피스빌딩 환산임대료 전분기 대비 상승

- 2018년 3분기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환산임대료는 3.3㎡당 117,974 원으로 전분기대비 0.9%, 전년동기대비 1.6% 상승
  - 연면적 3만 3,000㎡가 넘는 대형등급 이상 신축 오피스빌딩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산임대료가 상승
  - 권역별로 도심권과 강남권, 기타지역의 환산임대료는 상승하였으나 여의도권의 경우 전분기 대비 0.2%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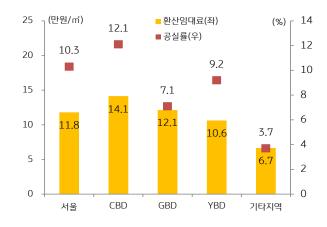
### 공실률은 전분기대비 하락

- 3분기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0.3%로 전분기 대비 0.3%p 하락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0.6%p 상승
  - 등급별로 중대형(연면적 5천평~1만평 미만)의 공실률은 3분기 7.9%로 전분기대비 0.2%p 상승하였으나 다른 등급은 모두 공실률이 하락
  - 권역별로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

# 매매가격 상승하며 서울 오피스빌딩시장 양호한 흐름 지속

-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분기 거래된 서울 오피스빌딩 자본환원 율은 전분기 대비 0.03% 상승한 4.69%를 기록
  - 3분기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3.3㎡ 당 30,500천원에 거대되면서 역 대 프라임 오피스 최고가 기록을 갱신
  - 경기침체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 중대형 오피스 시 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
  - ※ 공실률 상승 가능성에도 매매가격 상승과 자본환원율 '강보합세 유지'전망 우세 (GENSTAR 전문가조사 결과)

#### 그림 231 서울 오피스빌딩 전화임대료 및 공실률



자료: GENSTAR

#### 그림 241 프라임 오피스 역대 평당 최고가 경신사례



주: 파이크기는 총 거래규모를 의미

자료: MatePlus

### [미국 주택시장] 기존주택판매 8개월 연속 감소세

### 주택판매건수 감소 및 가격 하락세 전환

- 미국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하락 및 판매건수도 감소하는 추세
  - 9월 S&P/케이스쉴러 2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는 213.76으로 전월대비 0.02% 하락
  - 10월 미국의 신규주택 중간가격은 약 3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.1%하락하였으며, 신규주택 판매량은 54만 4천건으로 2016.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(전월대비 8.9% 감소)
  - •기존주택 판매량은 522만호로 전년동월대비 5.1% 감소, 8개월 연속 감소 추세 지속

# 소비심리 위축 및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택경기 하방압력 확대

- 미국 소비심리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주택경기 둔화 가능성 부각
  - 미국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지출 부분이 감소함에 따라 주 택수요층의 구매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
  - ※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소비지출 증가율을 기존 4.0%에서 3.6%로 수정
  -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2월 기준 4.81%로, 2017년말(3.99%)에 비해 0.8%p 상승
  - •소비심리 위축 및 추가 금리인상은 향후 미국 주택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

#### 그림 23I S&P주택가격지수와 모기지 금리



자료: Bloomberg



### [캐나다 주택] 과열양상을 보이던 캐나다 주택경기 둔화

# 금리인상 및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캐나다 주택가격 둔화 움직임

- 캐나다 주택가격지수는 2018년 9월 전년동월대비 0.2% 상승에 그치 며 5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
  - 중국 투기수요 집중으로 캐나다 주택가격은 2016년 들어 급등하며, 2016년 한해 동안 밴쿠버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% 상승
  - 하지만 2018년 들어 밴쿠버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빠르게 둔화, 9월 부동산거래량도 전월대비 12.7% 감소
-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대책과 더불어 금리인상, 대출신용요건 강화 등 으로 인해 부동산경기 둔화
  - 캐나다 정부는 올해초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자 상환능력 검증 강화, 외국인 취득세 인상 등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제시
  - ※ 2018.2월 외국인의 특별부동산 취득세 20% 인상, 7월 실거주자 아닌 외국인 투자 자에게 공실세 도입
  - ※ 2018.1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검증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·시행

# 금리인상에 따른 주 택담보대출자 부담 증가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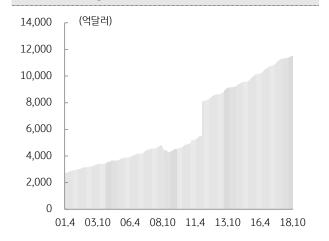
- 추가 금리인상 계획 등을 감안시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 부각
  - 2019년 말까지 3차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면서,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증가할 전망
  - CBC설문조사에 따르면 모기지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캐나다 국민(1 천명 대상)의 3/4이상이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, 캐나다 모기지의 상 당부분이 고정금리형식이나 향후 리뉴얼시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

### 그림 251 캐나다 주택가격지수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### 그림 26 주거용 모기지 잔액



자료: Bloomberg

### **FOCUS ISSUE**

###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주택청약제도

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지훈

### 1.청약제도의 도입 및 변화

### ■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1978년에 도입된 주택청약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됨

- 주택청약제도는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모색된 주택 공급제도로 『주택법』에 근거한 『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서 시행됨
  -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 받을 목적으로 분양 공모에 응모하여 분양 계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?
  - 청약제도는 1977년 제정된 『국민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 '국민주택청약부금' 가입자에 게 공공주택 공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시작
  - 이후 1978년 5월 『국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』을 제정되며 민영주택까지 청약대상에 포함되면서 청약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
- 『국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』을 바탕으로 하는 청약제도는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 수단으로 사용
  - 시행 초기 청약 요건은 까다롭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분양시장이 확대됨에 따라, 0순위 통장 불법거래, 당첨권 전매 등이 문제가 되면서 청약제도가 강화
  - 반면, 주택경기 침체 시에 청약제도는 완화기조를 보이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배수제 및 1세대 1계 좌 원칙까지 폐기 하는 등 극단적 완화기조를 보여왔음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청약 제도는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지키고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개편이 이루어짐
- 참여정부 시기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기조를 보임
  - 2007년 9월 1일부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 청약 가점제가 도입
    -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
  - 『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』에 의거하여 노부모 부양자,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 청약 경쟁 없이 별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를 마련
    - 2008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시행
- 전매 제한 제도는 청약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된 정책수단으로 분양시장 내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

<sup>2</sup> 장세훈(2002),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

-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계약 시기와 입주시기가 보통 2~3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 때문에 분양권을 사고 파는 전매에 대한 법률도 청약제도와 긴밀하게 연관
- 1990년대 및 2000년대 주택시장의 과열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 기간 제한이 강화되었으며,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매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안정화의 수단으로 활용
- 청약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2016년 11.3 대책 이후 규제 강화 기조로 변경

### 2.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

- 현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약제도를 개편
  - 현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적극 활용
    - 현정부 들어 청약제도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7년에 7번, 2018년들어 5번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, 올해 12월 7일 마지막 개편안이 확정 발표됨
      - 1978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청약제도는 총 127번 개정되어 1년에 평균 3.3번꼴로 개정
  - 2017년 발표된 8.2대책과 그 후속조치는 반복적인 청약당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음
    -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 지역에서 민영 주택 공급에 적용되었던 청약가점제 비율을 확대
      - 공공택지가 아닌 투기과열지구에서도 85m²이하 평형의 경우 100%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낮게 형성되는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을 사실상 차단

표 21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

	85 ㎡이하		85 ㎡초과	
구분	8.2 대책 이전	8.2 대책 이후	8.2 대책 이전	8.2 대책 이후
수도권 공공택지	100%	100%	50%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	
투기과열지구	75%	100%	50%	50%
투기과열자구 조정대상지역	75% 40%	100% 75%	50% 0%	50% <b>30%</b>

자료: 국토교통부, KB경영연구소 재정리

-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자격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(국민 주택의 경우, 납입 횟수 24회) 이상으로 강화하여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이사하는 무주택자의 청약을 제한
- 또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도입하여,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당첨 후 전매를 반복하는 것을 제한
  -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지역에서도 인기 민영 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전매

- 하는 형태를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이에 속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
- 마지막으로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가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미계약분 발생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
  - 기존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시 예비입주자를 추첨제로 선정
- 가점제가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의 불만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배려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확대
  -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되어 가점제에서 신혼부부들은 불리
    -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1년당 2점,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부여되며, 최초 1년을 제외하고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당 1점씩 부여됨
    - 인기단지는 청약가점 컷이 50점 이상인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에 직면
  - 2018년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며,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물량은 2배로 확대하고 청약 자격 기준 역시 완화
    -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은 15→30%, 민영주택은 10→20%로 대폭 확대
    - 지원대상 역시 기존에는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대상에서 혼인 7년 이내, 무자녀, 예비부부로 확대하였으며,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%에서 120%로 확대(맞벌이는 120%에서 130%로 확대)
      -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75%는 기존 소득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 선정, 나머지 25%는 소득 기준 신청자와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
    -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9억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
  -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되어있는 인터넷 청약을 특별공급까지 확대해 특별공급 청약의 편의성 향상

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(민영, 공공제외 국민 주택)

		게나바이나이저	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(만영, 공공제외 국민주택)				
		개선방안 이전	개선방안 이후	(기존소득기준 유지)	(소득기준 확대)		
공급할당기준	٨=	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	소득에 따라 공급비	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	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		
	소득	100%(맞벌이 120%)	율 할당 <sup>1</sup>	100%(맞벌이 120%)	120%(맞벌이 130%)		
공래율	민영	10%	20%	(15%)	(5%)		
	和	15%	30%	(22.5%)	(7.5%)		
공급대상	혼인기간	혼인기간 5년이내	혼인기간 7년이내				
	자녀	1자녀 이상	삭제				
고그人이	1순위	혼인기간 3년이내	称녀 가				
공급순위	2순위	혼인기간 3년 초과	無べけ パイ				
주택/격		제한 없음	9억 이하 주택				

주1: 개선방안 이후 확대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물량은 기존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선정

자료: 국토교통부, KB경영연구소 재구성

#### ■ 9.13 대책 이후 새로 개정된 청약제도는 12월 11일부터 적용

- 최근 주택거래가 다소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변시세 보다 분양가가 훨씬 낮은 일명 "로또 분양" 단지가 나타나면서 인기단지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
  - 2018년 수도권 청약률 상위 3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으며, 지난 상반기 분양한 택지개발지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분양단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수백만원 내외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소위 "로또 분양"으로도 불림
  - 분양시장 열기에 힘입어 청약통장 계좌수 역시 2014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
- 정부는 9.13대책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 강화와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자격 전매 및 거주기간 강화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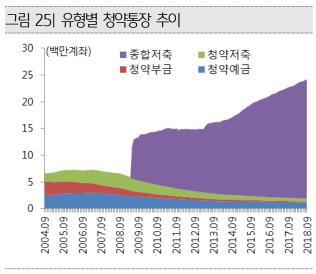


표 4) 2018년 청약경쟁률 상위 단지					
지역	경기 화성시	경기 화성시	경기 하남시		
<b>아파트</b> 동탄역 유림나 르웨이 숲		동탄역 예미지	미사역 파라곤		
<b>분양시기</b> 8월		4월	5월		
총세대수	312	498	925		
<b>일반공급</b> 206		369	809		
1순위 경쟁률	185 대 1	106 대 1	105 대 1		

자료: 부동산114 자료: 금융결제원

### 3.9.13 대책 이후 청약제도 변경사항

#### ■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무주택자의 혜택 강화 및 가점산정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

- 추첨제 대상 주택의 대부분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함으로써 무주택자 청약시 혜택이 강화
  -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%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남은 25%의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을 승낙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\*
  - 우선공급이 끝난 후에야 1순위 유주택자가 청약당첨이 가능하므로, 이번 개정안은 유주택자의 청약제 도 이용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※ 1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원천 봉쇄된다는 여론의 영향으로 보유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함

- 가점제가 확대됨에 따라 가점 산정기준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, 기존 가점산정에 일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
  -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점산정 방식의 중요성이 높아짐
  - 분양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 공급 자격을 제한
    - 기존에서는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높은 기점을 바탕으로 인 기 단지에 연속으로 청약이 당첨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
    - 12.11일 이후로 새로 시행되는 청약제도에선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문제점 개선
    - 또한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 된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,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이 박탈되어 기존에 계약된 국민 주택 입주가 취소되도록 변경
  - 기존 청약제도에서 부당하게 피해 및 이익을 보는 경우를 고려하여 청약가점 세부 조건 변경
    - 기존에 형편이 어려워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동거인, 사위, 며느리 등은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
    - 현행 제도하에서 주택소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청약가점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유한 부모의 자녀가 부모집에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단 점이 맹점
    -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소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청약가점에서 제외
- 부정 청약 당첨의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청약자를 차단하고, 무주택자의 투기 목적 청약을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
  - 부정 당첨된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여 부정청약을 차단
    - 제도상 부정청약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, 실제로는 전매 이후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 등으로 계약취소가 곤란하다는 문제로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
    -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주택법개정 - 다. 주택법 개정은 공시도입을 전제로 논의 됨
    - 또한 부정 청약자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로 벌금을 높이고,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부과
  -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가와 시세 차이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
    - 시세 차익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와 인근주택 시세 차이 정도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강화.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공공택지의 50%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
      - -기존 수도권에서 시세대비 분양가에 따른 전매제한은 개발제한구역 공공택지의 85m²이하 평형에만 적용
    -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의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
      - 분양가가 시세 70%이상 85%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, 시세 70%미만인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됨

-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m'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에 거주의무기간 부과
  - 기존에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을 50%이상 해제하여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만 거주 의무기간 부과하였으나, 범위가 확대됨

표 5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(9.13 대책 및 청약제도 개정안)

지역	택지	시세대비 분양가	구분	전매제한기간	거주의무기간	
	공공택지 (공공분양, 민간분양)	시세 70%미만	-	8년	5년	
		시세 70%이상 85%미만	-	6년	3년	
		시세 85%이상 100%미만	과밀억제 & 85 m²이하	5년	1년	
		시세 02%시의 100%미터	그 외	4년	l 1년	
	CCC0)	시네 100% OMF	과밀억제 & 85 m²이하	5년		
스트권		시세 100%이상	그 외	3년	-	
수도권	민간택지 (공공분양, 민간분양)	시세 70%미만	-	4년	-	
		시세 70%이상 85%미만	-	3년		
		시세 85%이상 100%미만	비투기과열지구	2년	-	
			투기과열지구	3년	-	
		시세 100%이상	비투기과열지구	1년6개월		
			투기과열지구	3년	-	
THE	고고태기		비투기과열지구	1년	-	
	공공택지 :		투기과열지구	3년	-	
지방	민간택지		지방광역시	6 개월(신규)	_	
	한민국사		조정대상지역	1 년 6 개월(신규)	_	

자료: 국토교통부, KB경영연구소 재정리

# 4.정책 변화의 시사점

### ■ 이번 개편안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바뀐 청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

- 현정부는 일관성있게 청약제도를 유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제한하고,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
-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개정된 청약제도 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분양 청약에 참여할 여건이 조성
  - 개정된 청약제도는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추점제 비중이 높은 85m²이상 민 영주택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
  - 가점 항목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,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민영 주택 청약과 함께 행복주택, 희망타운,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 필요
    - -8.2대책 이후 85㎡이하 면적에서 가점제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기 주택 청약의 경우 여전히 높은 가점이 필요

- 전매기간 증가로 인해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접근 필요
  -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클수록 전매기간이 길어짐(최대 8년)에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에는 위험이 높으며, 실수요 위주로 청약 접근이 필요
  - 한편, 이번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의 혜택에 맞춰지면서 연립/다세대 등 소규모 저가주택 소유자들의 주 거상향 이동 수요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도 존재

#### ■ 바뀐 청약제도로 인해 전반적인 청약경쟁률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분양시장 리스크 확대

- 일부 인기 단지에 청약통장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청약경쟁률은 하락할 전망
  -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 투자수요는 감소할 가능성 이 높음
  -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일부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최근 주택 거래시장의 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
-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규제 강화는 향후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#### 주택 청약제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시스템적 보완 필요.

- 청약제도는 그동안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세부조건이 무수히 변경되면서 해당분야에 지식이 없는 경우 청약시 어려움 발생
  - 주택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은 단지도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청약 컨설팅 시장도 확장
-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많은 개편을 거치면서 너무 복잡해으며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

### **MEMO**